

리브(Liiv) 서비스 이용약관(2022.9.30서비스종료)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리브(Liiv)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과 KB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의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리브"앱 이라 함은 모바일에서 금융거래 및 생활연계관련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2.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동의에 동의한 후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간편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 이용 및 회원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숫자 6자리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 4. "리브 ID"라 함은 당행 요구불계좌 미등록 회원의 본인확인을 위한 식별자를 말합니다.
- 5. "비대면실명확인"이라 함은 실명확인 의무가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실명확인증표 제출,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서 제출, 기존 계좌활용 등을 통해 은행이 정한 방법으로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 인증함을 말합니다.
- 6.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한 스마트폰 간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말합니다.
- 7. "이용매체"라 함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은행에 등록된 ID. 간편비밀번호 및 기타 은행이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8. "리브머니"라 함은 회원이 리브 앱을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9. "충전"이라 함은 회원이 사용 등록한 계좌에서 거래지시한 금액을 회원의 리브머니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송금"이라 함은 회원이 리브머니를 충전 후 타인에게 양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환불"이라 함은 은행이 회원의 신청에 따라 본인이 지정한 이용계좌로 리브머니 상당액을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12. "제휴업체"라 함은 은행과 제휴계약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13. "제휴금융회사"라 함은 은행과 제휴계약에 따라 회원의 요청에 의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회원 본인명의로 개설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14. "리브결제"라 함은 회원이 제휴업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리브머니 충전 및 양도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15. "대금환불"이라 함은 리브결제 후 회원의 반품 등의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고 고객에게 원화로 취소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16. "리브모임"이라 함은 회원이 모임관리를 위하여 관련계좌를 등록하고, 모임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7. "총무"라 함은 총무 본인명의의 당행 요구불계좌를 모임계좌로 등록하고, 모임 개설 및 회원관리(회원 정보관리, 일정관리 등), 회비관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18. "이용계좌"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리브 회원이 직접등록하는 본인명의의 국민은행 및 제휴금융회사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금융결제원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기관으로 참여한 참가기관의 입출금이 자유로운계좌(이하 '오픈뱅킹 계좌'라 한다)를 말합니다. 제휴금융회사의 입출금이 자유로운계좌를 "이용계좌"로 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리브앱을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심이체 출금동의"사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리브앱을 통하여 제휴금융회사 "이용계좌"등록내용을 해지해야 합니다.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리브앱·KB스타뱅킹앱·인터넷뱅킹 등 국민은행 비대면 채널을 통한 "제 3자 정보제공동의" 및 "추심이체 출금동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등록내용 해지를 원하는 경우 오픈뱅킹 계좌를 등록한 모든 채널에서 계좌이용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

- 19.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이용기관"이라 함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참가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비스 안내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또는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오픈뱅킹서비스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및 보내기, 결제, 출금, 비대면 계좌개설, 외환서비스, 생활연계서비스(리브톡, 더치페이) 등이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요 서비스 내용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 1. 송금: 연락처, 계좌번호, QR 등을 통한 간편보내기 서비스
- 2. 리브톡: 다자간 메신저 기능이 제공되는 간편송금 서비스
- 3. 간편출금: 통장이나 카드없이 본인이 이용등록한 계좌에서 전자지갑을 거치지 않고 바로 ATM, 창구 출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
- 4. 리브환전: 환전 신청 후 공항환전소 및 인근 지점에서 외화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
- 5. 리브간편해외송금: 지점 방문없이 절차를 간소화 하여 해외송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
- 6. 외화기프티콘: 가족 및 지인에게 외화를 선물하는 서비스
- 7. 외화모바일지갑: 미리 환전한 외화를 가상의 지갑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외화 및 원화로 인출 할 수 있는 서비스
- 8. 제휴업체 연계서비스: 선물하기, 교통/선불 충전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제휴서비스

제4조(이용신청 및 승낙) ① 서비스 이용신청 시 신청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리브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및 휴대전화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후 사용등록 할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승낙하기 위해 은행은 입력내용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계좌 명의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 단, 오픈뱅킹 계좌 등록의 경우 제3자 정보제공동의 및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완료된 경우에만 이용가능합니다.
- ② 제 1항의 절차를 거쳐 간편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2. 신청자가 입력한 명의가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허위로 이용신청하는 경우
- 3. 사용계좌를 등록한 회원이 중복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4. 만14세 미만의 자가 이용신청하는 경우 (단, 만 19세 미만의 회원인 경우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법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 6. 기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이 불가능하거나 법령, 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 ② 회원이 임의로 서비스를 해지한 후 재 이용신청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가입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최근 1개월 이내 5회 이상 임의 해지, 재가입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제6조(서비스 이용제한)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제한기간 중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또는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간편비밀번호를 연속으로 5회이상 오류 입력하는 경우
- 2. 1일/1회 이용한도를 초과한 경우
- 3. 스마트폰 등 이용매체의 도난 분실에 의해 은행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경우
- 4. 회원의 서비스 이용계좌의 상태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사고 신고 계좌
- 나. 법적 지급제한 계좌
- 다.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 라. 발급기준일을 당일로 하여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 마. 금융기관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 바.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록계좌
- 사. 기초생활보장급여, 연금 등 압류금지채권 입금 전용통장 계좌 (KB행복지킴이통장, KB호국보훈지킴이통장, KB국민연금안심통장 등)-

제7조(인증방법 및 부정거래탐지시스템)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은 간편비밀번호 및 휴대전화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이하 "본인인증 수단")등 은행이 정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신청 단계에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용신청 이후에는 리브 앱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본인인증수단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④ 간편비밀번호 분실 시 리브 앱을 통해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본인인증수단 외에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별도의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며, 부정거래가 탐지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중단하고 은행이 정한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송금, 거래지시의 철회 및 거래 취소) ① 회원은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을 통하여 리브머니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송금 이용 시 은행이 요구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은행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③ 회원이 리브머니를 이용하여 송금을 이용하는 경우, 거래지시 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이 등록한 이용계좌에 원화로 자동 환불합니다.

제9조(리브결제, 지급 및 거래 취소) ① 회원은 서비스 제휴업체에서 리브머니의 양도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리브머니를 통한 리브결제에 대해 제휴업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공할 뿐이며, 거래 물품 또는 용역의 배송이나 품질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③ 회원이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제휴업체와 합의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휴업체로부터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의 취소가 확인되는 경우 제휴업체가 직접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환불하기로합니다.

제10조(서비스 이용한도)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서비스의 통합 이용한도(1회, 1일)는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정하는 기명식 발행권면 최고한도인 200만원 이내에서 은행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한도제한계좌, 금융거래한도계좌는 통합 이용한도(1회, 1일)가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선불전자지갑 서비스	1회 한도	1일 한도	최대 충전한도
송급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리브결제 등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하지 않는 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서비스 이용시 안내를 통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리브환전 및 외화기프티콘 등 각종 업무의 수수료는 리브 앱에 게시합니다.
- ③ 제1항 및 2항의 수수료의 변경 사유 등이 발생 시 은행은 시행일 1개월 이전부터 시행일자 전일까지 리브앱을 통하여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으로 안내하며, PUSH, SMS 등 회원과 합의한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 ④ 회원은 제 3항의 수수료 변경 통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수료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12조(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은행은 회원의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며, 회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제13조(회원의 의무) ① 스마트폰 등에 저장되어 있는 이용자의 인증서암호, 각종 비밀번호 및 이용매체의 보안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간편비밀번호 및 계좌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알게 된 경우, 회원은 즉시 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③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은행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변경하여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④ 은행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⑤ 은행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4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원은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접속을 하여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③ 회원은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5조(서비스 제공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은행의 업무 또는 기술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별도로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 종류별 이용시간은 은행 웹페이지 및 리브 앱을 통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 ③ 은행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회원이 은행에 동의한 SMS, Push Message, 모바일 메신저 메세지 등을 통하여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시스템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해지) ① 서비스 이용 중지를 원하는 회원은 설정메뉴의 리브 회원 탈퇴를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 탈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송금이 수취인에게 수신되지 않은 경우
- 나. 외화모바일지갑에 잔액이 있는 경우
- 다. 총무로 지정된 경우
- 라. 이용계좌목록에 오픈뱅킹 계좌가 있는 경우



제17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회원이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폰 및 이용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 또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 ③ 은행은 회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은행은 서비스의 운영 및 제휴금융회사 변동사항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웹페이지와 리브 앱에 게재하고 SMS, Push Message, 모바일 메신저 메세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휴금융회사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이용하는 서비스 중지에 관련한 내용은 1개월 이전에 리브 앱 내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회원이 은행에 동의한 SMS, Push Message, 모바일 메신저 메세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웹페이지 또는 리브 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0조(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리브 앱 및 지점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회원이 은행에 동의한 SMS, Push Message, 모바일 메신저 메세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이 은행에 동의한 SMS, Push Message, 모바일 메신저 메세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리브서비스 사용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 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2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또는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등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3조(준거법)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2017.07.26) 이 약관은 2017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8.08.16) 이 약관은 2018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02.20) 이 약관은 2019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06.28) 이 약관은 2019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09,06) 이 약관은 2019년 09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10,30) 이 약관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0.01.07) 이 약관은 2020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0,05,18) 이 약관은 2020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0.12.10)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0.12.22) 이 약관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1.04.19) 이 약관은 2021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